

평창군공유재산관리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안

의안 번호	159
----------	-----

제출년월일 : 2005. 5. .

제 출 자 : 평 창 군 수

1. 제안 이유

불용 공유재산을 처분하여 활용가치 높은 대체재산을 취득하고 산재된 공유재산을 집단화하는 등 공유재산의 관리 처분업무의 효율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지방재정법 제5조 규정에 따른 평창군 공유재산관리 특별회계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임.

2. 주요 골자

- 가. 지방재정법 제5조 규정에 따라 설치 가능한 평창군 공유재산 관리 특별회계를 설치함.(안 제1조)
- 나. 특별회계의 세입금은 공유재산의 관리 처분에 따른 수입금으로 함. (안 제3조)
- 다. 특별회계의 세출금은 대체재산의 취득, 집단화 등 관리처분 사업에 소요되는 경비에 충당함.(안 제4조)
- 라. 기타 조례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5조 내지 제10조)

3.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 별첨
- 나. 입법예고(2005.3.12 ~ 3. 31)결과, 의견제출 없음
- 다. 예산조치 : 해당없음
- 마. 관계부처 승인 : 해당없음

평창군공유재산관리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재정법 제5조의 규정에 의거 평창군 공유 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 및 운용하기 위하여 평창군공유재산관리특별 회계를 설치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자금의 운용 및 관리) 평창군공유재산관리특별회계(이하 "특별 회계"라 한다) 운용 및 관리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군유 잡종재산 중 필요없는 토지를 매각하여 향후 활용가치가 있는 토지를 매입하여 토지의 고부가 가치로 수익증대
2. 토지의 활용가치를 위하여 분할·합병
3. 산재된 공유재산의 집단화
4. 공유재산관리의 효율화
5. 각호에 명기되지 아니한 사항은 평창군 일반회계 예에 의한다.

제3조(세입) 공유재산 관리 및 운용을 위한 세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유재산 매각대금
2. 공유재산 사용료, 대부료, 연체료, 변상금
3. 일반회계 전입금

제4조(세출) 공유재산관리 및 운용을 위한 세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향후 활용가치가 있는 잡종재산의 취득
2. 토지의 질 향상을 위하여 분할·합병 및 공유재산의 집단화
3. 군 개발계획에 의한 토지의 매입
4. 공유재산관리에 필요한 일상적 경비
5. 기타 재산관리 및 운용에 필요한 경비

제5조(전출금지) 이 회계에서 다른 회계로의 전출은 금지한다.

제6조(예비비) 이 회계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외의 지출 또는 예산 초과 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세입·세출예산에 예비비를 계상할 수 있다.

제7조(예산편성·결산 및 운용 등) 이 조례에 의한 예산편성·결산 및 운용에 대하여는 일반회계의 예에 의한다.

제8조(회계관리) 자금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는 관계대장을 비치하고 자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보관하여야 한다.

제9조(준용규정)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평창군재무회계규칙을 준용한다.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계법령 발취

□ 지방재정법

제5조(회계의 구분) ①지방자치단체의 회계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로 구분한다.

②특별회계는 공영기업 기타 특정사업을 운영할 때 또는 특정자금이나 특정 세입·세출로서 일반세입·세출과 구분하여 경리할 필요가 있을 때에 한하여 법률 또는 조례로 설치할 수 있다.

□ 지방재정법시행령

제83조의2(재산매각대금의 용도 등)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공유재산을 매각한 때에는 그 매각대금을 매각재산에 상응하는 새로운 재산조성비에 충당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